■ 민족문화연구 제93호(2021.11.3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21-148.
http://doi.org/10.17948/kcs.2021..93.121

유교의 禮學的 탐구를 통한 孝 사상 고찰

서정화(徐政嬅)*

목 차

1. 서언(유학 사상으로서의 효의 정의)
2. 효 사상 주체의 계층 확대
3. 『논어』에서 그려지는 삼년상의 본의 및 효와의 관계
4. 유교 예학에서 효자와 계승자
5. 결어(유교의 현실적인 상・제례와 효 사상을 돌아보며)

국문초록

유교 예학에서, 계승자를 의미하는 宗子・宗孫은 孝子・孝孫과 같은 말이며, 제왕이라 해도 자신이 부모를 계승하지 않았다면 孝心의 유무와 상관없이 공식적으로 孝子가 되지 못한다. 受命・創業之君의 자리에 오른 것이, 부모나 선조의 뜻을 받들어서 오른 것인지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오른 것인지에 따라, 사망 후 부여되는 諡號에 '孝' 자가 포함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한다.

효도와 선조 제사는 '유교 사상'과 '유교 의례'의 관계이고, 효도와 삼년상은 '유교 사상'과 '인륜적 정서'의 관계이다. 즉 효는 본질의 문제이고, 제사는 그가 진정한 후계자 다운 사람임을 나타내는 외형적・대외적 표현의 수단일 뿐이다. 또, 3년의 喪은 자식이 끈끈한 親의 관계 속에 있었던 부모를 잃은 충격과 상심을 조금씩 진정시켜 가는 과정의 시간들이다.

* 동방문화대학원대 동양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자녀가 부모를 가깝고 극진하게 봉양하며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품속에서 받은 사랑과 보살핌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상호적인 인륜(윤리)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부모가 품었던 대의적인 뜻과 일삼았던 일을 계승한 계승자를 의미하는 효는, 개개인의 신념에 의한 선택으로 수용되는, 사상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주제어: 孝 사상, 孝道, 三年喪, 父子有親, 禮學, 諡號.

1. 서언(유학 사상으로서의 효의 정의)

‘유교의 전통적인 효 사상은 지금 현재도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훌륭한 윤리 덕목이며 정신 문화적 자산이다.’라는 주장에 반기를 들 사람은 그다지 없을 것이다. 오늘날 너무나도 자주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는, 양부모나 친부모에 의해 자행되는 아동학대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러한 짓을 저지른 사람 앞에서라면, 효는 부모답지 못한 부모에 대한 사회 교화적 대책으로 결코 적절한 관념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라도 부모를 용서하고 효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할 수도 있을 듯하다.

유학에서는 부모의 악함을 자녀의 효와 별개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오히려 부모가 악하더라도 자녀의 효는 사라지지 않는 의무처럼 논의된다. 황간(488-545, 梁)은 『논어』를 주석하면서, 아버지의 선악은 논하지 않고 자식의 효심만을 논할 뿐이며, 설령 아버지의 업적이 악했어도 주변인들이 알아서 잘 보필했을 것이기 때문에 孝子를 관련시킬 것이 없다는 관점을 보인다.[1] 주자의 集註에서도 역시, 아버지의 악행이나 그릇된 도에 대한 자식의 직접적인 질책이나 반감은 전혀 논의되지 않는다.[2] 이러한 입장에

---

1) 『論語集解義疏』 卷1, 「學而 第1」: 父在, (…) 可謂孝矣.[皇侃 疏——(…) 或問曰, “若父政善則不改爲可, 若父政惡, 惡教傷民, 寧可不改乎?” 荅曰, “本不論父政之善惡, 自論孝子之心耳. 若人君風政之惡, 則冢宰自行政; 若卿大夫之心惡, 則其家相邑宰自行事, 無關於孝子也.” (…).]

※ 본 논문에서 참고한 원전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한국 자료 : https://db.itkc.or.kr(한국고전종합DB), http://db.history.go.kr(한국사데이터베이스). 중국 자료 : 四庫全書, https://ctext.org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 『論語集註』 卷1, 「學而 第1」: 父在觀其志 (…) 可謂孝矣.[集註——(…) 必能三年無改於父之道, 乃見其孝,

대한 합리적인 이해와 납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극단적인 예시로서, 자식을 학대한 자가 그 자식으로부터의 효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해도 된다는 주장을 펼친다면, 유학에서는 그와 같은 궤변에 학술적인 분명한 대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의 정서나 당연의 윤리로 반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 내지 복종이 가부장적 가족윤리로서의 유교 교리적 범주 안에서 부정되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며, 바로 그 점은 현대사회에서 유학이 자칫 비합리적 이상과 관념에 빠진 구시대적 유물로 오인받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효의 사상적 의의를 고찰함에 있어서, 필자는 일반적인 가정 윤리적 접근을 지양하고 유교 禮學의 천착을 통해 접근해 가고자 한다. 유학 사상을 알면 禮를 이해할 수 있고, 예를 통찰하면 유학이라는 철학에 깊게 다가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유학의 예는 유학 사상을 담은 그릇이다.

'보도된 사례들과 같은 아동학대 부모의 자녀에게도, 효 덕목은 권장되어야 하는가?'

유교의 예학적 관점에서 이 물음에 대한 필자의 기본 입장은, '직업이 없는 사람도 직장상사를 공경히 따라야 하는가'라는 非文으로 반문하고자 한다. 孝의 정의는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일을 일삼기를 훌륭히 잘 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3] 계승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계승해서는 안 되는 부모의 그 무엇을 대상으로 효행을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러나 만일, 자신이 학대받으며 성장하였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부모의 일을 일삼기를 잘 해내기로 자기 스스로 '선택'하였다면, 그리고 만일 그에 따른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있다면, 부모의 일을 일삼기를 잘 해내는 것은 그때부터 '의무'가 되고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 되는 것이다. 필자의

不然則所行雖善, 亦不得爲孝矣. 尹氏曰, "如其道, 雖終身無改, 可也, 如其非道, 何待三年? 然則三年無改者, 孝子之心, 有所不忍故也." 游氏曰, "三年無改, 亦謂在所當改, 而可以未改者耳."

3) 효에 대한 유학적 정의는 서정화, 「『논어』에서 말하는 공자 효 사상의 본질적 의미—'공자에게 있어서 삼년상과 제사는 효일까?'를 절문(切問)하는 과정에서—」, 『유교사상문화연구』 85, 한국유교학회, 2021에서 비교적 심도 있게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황간과 주희가 부모의 악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식의 효행을 강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헤아려 본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孝'를 '어버이를 잘 섬기는 일'이라 정의한다. 이 짤막한 구절은 『설문해자』에서의 효에 대한 자전적 설명으로도 드러나며 『논어집주』에서 주희가 내린 사상적 정의와도 상통한다.[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효행장려법)】에서는 효를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5] 이 법률에서는 섬김[事]을 부양과 봉사[奉・養]로 해석한 것이다.

'事'자인 '섬기다'를 현재는 '돌보다, 받들어 모시다' 정도로 이해하는데, 한문에서 그것은 원래 '일삼다'의 뜻이다.[6] 事親을 '부모를 섬기다'보다, '부모의 일을 일로 삼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현대의 우리에게는 의미전달이 더 빠를 듯하다.

위 효행장려법의 목적(제1조)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그런데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표현은 마치 각 가정에서 노인부양을 개개인이 성실히 임할 것을 법률로 정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을 듯한데, 이 법 제6조와 제10조를 통해 보면 실제로 그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7] 이는 마치 그 옛날 일반 민중들에게 효를 종용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벌였던, 기괴한 내용들까지 담고 있

---

4) 『說文解字』, 「老部/孝」: 孝, '善事父母'者.; 『論語集註』 卷1, 「學而 第1」: 有子曰 (…) 未之有也.['善事父母', 爲孝; 善事兄長, 爲弟. (…) 此言人能孝弟, 則其心和順, 少好犯上, 必不好作亂.]

5)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효행장려법) 제2조(정의) 참고. https://www.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

6) 서정화, 위의 글, 75면 참고.

7) 효행장려법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는 이야기를 확산시키며 행하였던 민간인에 대한 효행 캠페인을 연상시킨다. 당시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이 뒤따른 것은 물론이다. 우리나라 고대국가로부터의 왕조 시대에 효 이념이 이 땅에 들어와 윤리문화로서 뿌리내린 과정에서, 계몽되지 못한 일반 민중을 상대로 했던 그것과 비교했을 때, 국민 대다수가 필요, 내지 충분한 교육을 받은 지금의 그 캠페인은 법률 내용에서 보더라도 '아름답기' 그지없다. 묻고 싶다. 오늘날의 고령사회 문제가 과연 효의 실천[孝行] 종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

'순종의 윤리' '복종의 윤리' '감사의 윤리' '보은의 윤리' '부양(봉양)의 윤리', 효의 정의를 무엇으로 할까? 효 이념의 순기능 역기능을 논하기 전에, 이처럼 효란 무엇인가라는 그것의 정의가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은, 비록 여러 분야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효의 본질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효 전통의 역사는 유구하지만, 이 땅에 전해진 효 관련 이야기는 상당수 유학 사상의 본연과 무관해 보이는 부분이 적지 않다. 지나온 오랜 과정에서 여러 이념과 믿음이 덧씌워진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마치 상식처럼 알고 있는 효 관념은 아닌가 돌이켜 본다. 그도 그럴 것이, 효 관념은 공자 이전에도 존재했고, 도가 묵가 법가 잡가 등등의 제자백가는 물론, 부모를 포함해서 속세와의 모든 인연을 끊어내고 출가수행을 중시하는 불교에서조차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자신의 허벅지 살을 도려내어 병든 부모를 봉양하였다는 등의 이야기가 유학의 효 사상과 일정 부분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 점은, 특정 종교와 의식적・사상적 경쟁 속에 있었던 시대의 유학자들 본인의 은근한 방임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8] 조선말 정약용은,

8) 유교의 왕조 조선 시대에도, 부모를 위해 斷指割股를 한 자들에게 旌門과 부역 면제 또는 기타의 포상이 명해진 사례는 수없이 많다(『성종실록』 성종 2년(1471) 6월 23일 甲子[5], 성종 20년(1489) 5월 10일 丁卯[2], 『중종실록』 중종 8년(1513) 6월 2일 己亥[2], 12월 1일 乙未[6], 『명종실록』 명종 10년(1555) 3월 29일 甲子[03], 『숙종실록』 숙종 30년(1704) 9월 17일 甲寅[2], 『정조실록』 정조 18년(1794) 1월 9일 丁酉[6] 외 다수).
斷指割股가 유학의 뜻이 아니라고 많은 유학자들이 목소리를 냈지만, 또 왕이나 예조에서도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겠지만, 극단적인 자학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사람들을 감동의 효자라 칭송하고 포상하는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막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전문의라도 되는 양, 부모의 병세를 치료하기 위해 직접 부모의 똥을 맛보고[嘗糞], 자기 손가락을 잘라[斷指] 흐르는 피를 드시게 하거나 넓적다리 살을 베어낸[刲股(割股)] 것을 고기 음식으로 드리는 행위는, 공맹과 주자의 본지가 결코 아닌데도 마치 효행 영웅담이나 된 듯 역사책에 계속 기록되어 왔음을 개탄한 바 있다.[9]

단지 할고의 殺身成孝는 유학의 효 사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표현이다. 만일 어떤 유학자가 부모에 대한 극진한 사랑으로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조금이라도 부여잡고자 다급한 마음에 자신이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시게 하였다면, 그 행동이 유학 사상과 유학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대의적인 행동이었을지, 또는 부모를 극진히 사랑하는 선량한 한 개인으로서 했던 행동이었을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10]

필자는 유교의 예학 및 그 경전을 토대로 한 유학 사상에서의 '孝'를 다소의 연문을 넣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즉, 효는 '부모(선조)에 대한 엄숙하고 집중된 마음을 바탕으로, 부모가 뜻하신 바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일삼으신 바를 잘 받들고 계승함 또는 계승한 자'이다.[11]

不肖는 불효와 같은 말이다. 불초 즉, '닮지 않았다'는 말은 부모를 닮지 않았다는 것으로, 부모를 닮고자 하는 절실한 노력이 효의 출발점인 셈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닮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자녀가 자신을 통해 닮고자 하는 것을 우선 만들어줌이 바로 효의 출발지점인 것이

---

9) 『與猶堂全書』, 第1集, 「詩文集 第11卷」, 〈文集/論/孝子論〉. 한국고전종합DB 번역문 참고. ※ 柳希春(1513~1577), 『眉巖集』 卷15, 「經筵日記」, 戊辰(1568) 九月 역시 참고.

10) 단지나 할고로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냄으로써 갖게 되는 보람과 기쁨은 온전히 개인 몫의 행복이다. 이러한 행동을 스스로 또는 그 가족이 행정 관료에게 보고하여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자가 있다면, 그간 국가가 나서서 명예나 포상을 안겨주기도 했던, 민중에 대한 충효의 통치 정책에 의한 심리와 무관치 않다. 통치자가 효를 충으로 가는 이데올로기로 활용한 본질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는 사람의 심리를 악용한 권모술수의 覇道일 수는 있어도 유학에서 이상이라 여기는 王道라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11) 서정화, 위의 글, 73-75면 참고.
효의 정의에서 "엄숙하고 집중된 마음"은 '敬'을 풀어쓴 것이다. 『논어』에서 효의 자세로서 언급된 敬은 마음의 공경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것은 '恒自肅警(언제나 스스로를 엄숙히 하면서 경계시킴)' 陳善閉邪(선함을 펼치고 삿됨을 닫아버림), 主一無適(하나에 전념하여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함) 등을 포괄한다. 같은 글, 91-93면 참고.

다. 즉, '효'는 단순히 인간의 정감이나 심정의 문제를 넘어서 '부모의 그 무엇인가를 닮은 계승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2. 효 사상 주체의 계층 확대

필자는 '자녀가 부모를 가깝고 극진하게 봉양하며 사랑하는 것'을 '親의 하나'라[12] 정의하고자 한다. 孝는 유교 사상의 영역이고, 親은 유교 윤리의 영역이다.[13] 윤리는 인간 사회의 안정적인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집단 전체가 갖는 보편화 된 당위적 가치이지만, 사상의 가치는 개인의 개별적인 수용으로 인정된다. 동시대의 윤리와 사상은 상호 관련성을 갖지만, 당위의 윤리가 사상과 불가분으로 결합되면 경직된 이념화가 되기 쉽다.

유학에서의 윤리는 맹자의 五倫[14]을 통해 구체화 된다. 그가 말한 다섯 가지 인륜인 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지니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즉, 진정한 부자 관계에는 가까이하며 사랑하는[親] 윤리가 있어야 하고, 진정한 군신 관계(일테면 직장 내 상하 조직)에서는 정의롭고 대의적인[義] 윤리가 있어야 하며, 진정한 부부 관계에는 각자 독립적인 분별[別]의 윤리가 있어야 하고, 진정한 長幼 관계에서는 함께하는 자리에서 선후의 질서적[序][15] 윤리가 있어야 하며, 진정한 붕우 및 동료 관계에서는 주장이나 신념의 말에 미덥게 하는[信][16] 윤리가 있어야 한다. '자녀가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아끼

12) '親'은 친밀하게 가까이 보며 친애하는 상호관계를 말한다. 가장 가까운 이는 부모-자식 사이이므로, 자식 입장에서 '친' 그 자체는 부모가 된다. 父子有親에서, 父 입장에서 자식에 대한 親이 있고, 子 입장에서 부모에 대한 親이 있다. '親의 그 나머지 하나'인 父 입장에서의 親은, 개략하여 말한다면 자녀를 가까이에서 언제나 살펴봐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3) 倫理는, 『맹자』의 父와 子, 君과 臣, 夫와 婦, 長과 幼, 朋友와 朋友 등의 인륜 항목에서 볼 수 있듯, 상호 소통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 보편타당하면서도 당위적으로 지니는 인간관계(人倫) 이치를 말한다.

14) 『孟子』, 「滕文公 上」.

15) 序 : 堂 위에서 좌우 벽 쪽으로 열을 지어 서는 자리. 남쪽(阼階・西階 방향)이 하석이고, 북쪽(室 있는 곳)이 상석임. 나중에는 순서, 서열의 의미로 확장됨.(『說文解字』, 「广部/序」: 序, 東西牆也. 从广予聲.; 『爾雅』, 「釋宮」: 東西牆謂之序.; 『釋名』, 「釋宮室」: 序, 次序也.; 『御定康熙字典』, 卷9, 「寅集下/广部/序」: 爾雅釋宮, 東西牆謂之序, 註, 所以序別內外; 疏, 此謂室前堂上東廂西廂之牆也.)

는 것'은, 가까이하며 사랑하는 인륜적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을 뿐이지, '부모가 일삼아 왔던 훌륭한 일을 잘 계승하는[善事父母]' 효 사상에서 그것은 별개의 정서이다.

부모에 대한 지극한 봉양은, 사랑의 마음에 의해 행할 수 있고, 의무에 의해서도 행할 수 있으며, 둘 다에 의해서도 행할 수 있다. 사랑에 의한 것은 순전히 父子有親을 해왔던 결과이다. 의무에 의한 것은 조금이라도 효의 길을 선택한 자의 의무적인 결과이다. 사랑과 의무가 결합된 것은 효의 길을 선택한 자가 부자유친까지 잘 되어 있어서 사랑과 의무가 조화롭게 결합된 결과이며, 유학에서 권장하는 이상적인 효행의 모습이면서도 모든 이가 부러워할 만한 관계이다. 즉, 유학의 효 사상에서의 부모봉양은 부모가 일삼는 일을 잘 계승하는 노력과 그 과정에서 따라오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여러 세세한 일들 중 하나이다.

부모의 뜻[志]과 일[事]을 잘 계승하는 사상인 효는, '부모가 뜻과 일을 가졌을 때'와 '그 뜻과 일을 자식이 계승하고자 한 경우'에서만 논할 수 있다.[17] 그 뜻과 일이란, 생명 부지하고자 또는 먹고자, 입고자 하는 등의 가장

---

16) 信 : 사람의 말, 미덥게 하는 말, 말이 남에게 미더움을 주게 하는 말. '믿다'가 아니라 '미덥다, 믿게끔 하다'가 본의임.(『說文解字注』, 「言部/信」: 信, 誠也. 从人从言, 會意.[段玉裁 注——釋詁, 誠, 信也, 從人言. (…) 人言則無不信者, 故從人言.])

17) 부모로부터 계승 받은 것 중 달콤한 이익만 취하고 힘이 들어가는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도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장자를 가문의 주인으로 삼아서 그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였다면, 그 권리와 함께, 제례를 포함하여 집안의 대소사와 가문 내 구성원들을 돌보라는 의무도 함께 내려준 것이다. 이를 문서화 해서 법으로 규정함은 法治라 할 수 있고, 정도와 권도를 적절히 혼합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함은 유학에서 이상으로 여기는 禮治라 할 수 있다. 유년 시절부터 孝悌를 교육한 것은, 가문 내 예치의 실현이 그 이유 중 하나이다.
다른 경우로, 혹시 누군가 주관적으로 자신의 부모가 계승할 만한 것이 없다 낙심하거나, 효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듯하다.
부모와 자식 사이 有親하였다면 이미 충분하지 않을까? 계승할 것이 있다면 錦上添花이겠지만 굳이 첨화의 과욕까지 부모에게 요구해야 할까? 우리 사회에 만연된 금수저 흙수저 논란은 어쩌면 물질면에서의 계승에 대한 자녀 세대의 목마름의 표출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회가 정신적·도덕적 이상과 물질적 이상의 경중이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친 상황을 그대로 투영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의 유학자(진짜 유학자)들이 자녀들에게 계승시켜주는 것으로 금수저가 아닌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최고 가치로 여긴 것은, 그들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물질을 천시한 비현실적인 이상

원초적인 본능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체의 일들은, 당연히 아닐 것이다.

철저하고 경직된 신분제 사회에서 뜻과 일을 지닐 수 있으려면, 그럴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했다. 天下와 國·家를 통솔하고 움직이는 왕 제후 (경) 대부들은 위대한 뜻과 일을 지녀야 德(통치자 다움)이 있는 지도자일 수 있었다. 춘추 말 이래로 귀족계급이 아닌 士 계층이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전면에 등장하고부터 士의 德 역시 중요한 덕목으로 부상되기 시작한다. 士는 군주에게 고용되어 직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 대부분 혈연적으로 왕족이나 귀족의 후손이지만 귀족은 아니다. 따라서 士의 공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아니다. 아래 子貢과 공자의 대화에서 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 『논어』「子路」편 :
> 子貢이 "어찌하면 士라 이를만합니까?"라고 물으니, 공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기 주체적 몸가짐으로 행함[行己]에는 염치를 지니고, 시키는 일을 사방팔방으로 수행함에는 군주의 命을 욕되게 하지 않으니, (그런 자를) 士라 이를만하다." "그다음 차순을 감히 묻습니다."라고 하자, "동종의 친족[宗族]에게서는 孝라 칭하고(즉, 효에 걸맞게 하고), 지역사회[鄕黨]에서는 悌라 칭한다(즉, 悌(弟)에 걸맞게 한다)."라고 하였다.[18]

처음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는 사의 직업적 덕목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의 사회적 덕목을 말해주고 있다. 「학이」편에서 언급된 "제자들은 (宗族 안으로) 들어왔다면 孝로써 하고, (鄕黨으로) 나갔다면 悌로써 한다."[19]라 한 것은, 사의 사회적 덕목을 집중해서 말한 것이다. 직업적

주의자이어서가 아니다. 그들의 수양이 향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득도가 아니라 이상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리더의 능력을 키우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정치적 통찰력은 물론 도덕적 우수성을 포함한다.(사회 안에서 증식된 재화에 대한 정의로운 有無相通의 혜안은 사욕이 없는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들이 수양의 노력을 仕路에 들지 못하였어도 실망하지 않고 지속한 것은, 그 꿈이 조정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8) 『論語』, 「子路」: 子貢問曰, "何如斯可謂之士矣?" 子曰, "行己有恥, 使於四方, 不辱君命, 可謂士矣." 曰, "敢問其次." 曰, "宗族稱孝焉, 鄕黨稱弟焉."[邢昺 疏(『論語注疏』 卷13, 「子路 第13」)——宗族, 同宗族屬也. 善事父母爲孝, 宗族內親, 見其孝而稱之; 善事長上爲弟, 鄕黨差遠, 見其弟而稱之也.]

19) 『論語』, 「學而」: 弟子, 入則孝, 出則悌.

덕목은 일시적·장기적 실직 등 경우에 따라서 펼칠 곳이 없을 수 있어도, 사회적 덕목은 잠시도 내려놓을 수 없는 일이다.

조선 시대와 같이 과거제를 통한 인재 등용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귀족(왕족)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사라지고 士가 중심 계층이 되었다. 비록 법제적으로 大夫라는 작위와 신분이 있어도 그 대부는 지위가 상속되지 않은 고위직의 사일 뿐이다. 이때가 되면 개개인의 뜻과 일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천민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게 된다. 어떠한 이유로 仕路에 진입하지 못하였어도 개개인의 도덕적 수양이 개개인의 뜻과 일이 되고, 그 자손들은 숭고한 선친의 뜻과 일을 계승하여 효자가 되는 것을 아름다운 가치로 여기게 된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에게서 보이는 대를 잇는 효의 정신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이 점은 오늘날에도 유학의 효 사상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도덕적으로 어떠한 善한 영향을 주게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 준다.

3. 『논어』에서 그려지는 삼년상의 본의 및 효와의 관계

조선 시대 사대부 양반 가문에서, 자식 된 자로서 부모의 三年喪을 지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심성이 드러나는 중요한 일이자 동시에 가문의 윤리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했다. 부모의 상에 3년간이나 공무를 포함해 일체의 대외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상심에 빠져 있다는 것은, '훌륭한 품성으로 자식을 지극히 사랑해 주셨던' 그 부모의 자식이라는 점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즉 그것은 자식의 선함과 부모의 선함이 한꺼번에 증명되는, 국가에서 법제화시킨 예 제도였다.[20] 이렇듯 삼년상의 예법은 喪禮,

20) 조선 시대 사대부 三年喪의 전거는 私家禮인 『朱子家禮』 「喪禮」편은 물론, 국가례인 『國朝五禮儀』의 「凶禮」편 〈大夫·士·庶人喪〉조, 『經國大典』의 「禮典」편 〈五服〉조 등에서도 마련되어 있어서, 그 居喪 방법은 제도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었다.
안호용에 의하면, 부모상을 당한 관리들은 공직에서 물러나 3년간 居喪하는 것이 당연시된 원칙이었고, 다른 한편 그러면서도 왕의 부름으로 3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사양과 재차 권유라는 간곡하면서도 다소의 형식적인 서면 절차를 거쳐서, 왕의 그와 같은 敦諭를 대부분은 명예롭게 생각하며 공무에 복직하였는데, 이러한 거상 기간의 출사는 주로 조선전기에 많

즉 禮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데, 그러나 사실상 공자의 사상을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논어』에서는 喪 개념을 禮 범주 밖의 존재로 거론하고 있다. 다음의 대화가 그렇다.

> 『논어』「陽貨」편 :
> 宰我의 질문이다. "三年의 喪은, 만1년이어도 이미 오랜 시간일 것입니다. 군자가 3년간 禮를 행하지 못하니 예는 반드시 붕괴할 것이고, 3년간 樂을 행하지 못하니 악은 반드시 붕괴할 것입니다. (…)" 공자가, "저 차진 곡식[稻]을 먹고 저 번쩍이는 비단[錦]을 입는 것이 너에게 있어서 편안하게 되더냐?"라 말하자, "편안합니다."라 했다. (…) 재아가 나가자 공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재아의 仁하지 못함이여! 자식은 3년간 성장하고 그렇게 된 후에 부모의 품에서 벗어난다. 저 3년의 喪(상심)은 천하 사람들의 공통된 상심[天下之通喪]이다. 재아는 그 부모에게 3년간의 아껴주심을 받았을까 싶구나."[21]

위 재아의 질의와 공자의 대답에는 '삼년의 상으로 禮를 행하지 못하고 樂을 행하지 못하는[22] 것'에 대한 다른 말은 거론되지 않았다. 부모의 품 안에

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안호용, 「조선시대의 삼년상과 기복제도」, 『한국사회』 15-2,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2014 참고.

이는 바꿔말하면 부모의 상사에 삼년상을 지내야만, 또는 반드시 지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만, 공직자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된다. 부모상을 당한 자가 장례만을 치르고 몇 주 혹은 며칠 만에 돌아와, 겉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마음속 슬픔만을 지닌 채 조정에서 평소의 업무를 특별한 결함 없이 이행하고 있다면, 그와 같이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不善한' 자는 나랏일을 맡겨서는 안 되는 탄핵감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자식의 善을 국가가 법제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울러, 삼년상을 불평 없이 기꺼이 치른 바로 그 善한 자식이 지니는 부모에 대한 간절함은 부모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부모 역시 善한 존재라는 것은 이미 想定된 전제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실의 실제적인 선함'과 '전제된 선함'이 아무런 충돌 없이 서로 뒤섞여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21) 『論語』, 「陽貨」: 宰我問, "三年之喪, 期已久矣. 君子三年不爲禮, 禮必壞; 三年不爲樂, 樂必崩. 舊穀旣沒, 新穀旣升, 鑽燧改火, 期可已矣." 子曰, "食夫稻, 衣夫錦, 於女安乎?" 曰"安." "女安則爲之. 夫君子之居喪, 食旨不甘, 聞樂不樂, 居處不安, 故不爲也. 今女安, 則爲之." 宰我出. 子曰, "予之不仁也. 子生三年, 然後免於父母之懷. 夫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 予也, 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

22) 물론 지금이나 조선 시대나, 喪의 때를 포함하여 상례와 일반인들의 조상 제사에 樂이 쓰이지는 않는다. 『주자가례』의 冠婚喪祭 그 어디에서도 악을 쓴다는 언급이 없다. 축제처럼 보일 것 같은 혼례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세대가 넘어감을 느끼는 부모의 심정이 배려된 것이다. 전통 유교 의례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송대에 만들어져 근세기에 대중화된 私家禮인 『주자가례』에 입각한 관혼상제만을 떠올리게 되지만, (이른바 四端으로 알 수 있다는 인의예지라는 인간 心性으로서의 禮

서 한시의 벗어남 없이 길러진 기간보다 더할 것 없는 그 3년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아파하는, 부모를 잃은 것에 대한 상심의 기간'으로는 너무 길다고 항변하는 것에 대한 핀잔만 있을 뿐이다. 즉, 이들의 대화 속에서 삼년상은 예라고 하는 의례의 범주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물론 지난 왕조 시대에 삼년상은 喪禮라고 하는 禮의 범주 안에 있어 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아와 공자의 대화 속에 드러나는 삼년상의 개념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것과의 간극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23]

아울러 공자는 3년의 상이 천하의 통상이라 했지만, 그것을 효에 결부시켜 말하지는 않았다. 개념적으로 '三年喪'과 '孝'는 공자에게 있어서 별개의 문제이다. 즉,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전혀 맛있지 않고 화려한 옷을 입어도 아름답게 느껴지지 못하는 3년 동안 앓는 상심의 고통은, 그 사람이 부모로부터 지극한 보살핌과 깊은 사랑을 받고 자란 자식으로서의 仁함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3년의 상심을 겪는 것으로 그가 효의 길[孝道]을 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공자의 논평은 찾을 수 없다.

4. 유교 예학에서 효자와 계승자

1) 예학에서 효자·효손은 계승자를 말한다

『예기』의 「교특생」편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한) 제례에서

가 아닌,) 의례로서의 禮는 원래 樂이 따라온다. 이른바 先王之樂이라고 하는 그 악은 각 의례에 해당되는 희노애락을 절도있게 일으켜주는 도구인데, 도구라는 점에서는 예 역시 마찬가지이다.

23) 그에 따라, 三年喪이 禮에 편입되는 경위와 과정 및 그 의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공자 이래 예를 중요하게 다루었던 순자(BC.313-BC.238)의 예학 사상은 물론, 先秦·兩漢의 많은 예론들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통한 심도 있는 분석 과정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에서도 논한 바 있듯 조선 시대의 경우, 관리들의 부모 상사에서의 삼년상 이행 여부로 그의 효심과 자질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관리의 효심에 대한 공개적 증명이 필요하던 시대에 삼년상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의례로 편입되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상심[喪]은 마음속 문제이지만 상심의 의례[喪禮]는 그 아픔의 정도를 겉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喪의 의례화는 관리 등용에 있어서 孝廉이라는 것이 제정되고 확대되던 시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을 듯한데, 이는 차후의 숙제로 남기고자 한다.

‘孝孫’ ‘孝子’라고 칭하는 것은, 마땅함[義]으로써 칭한 것이다.”[24]라는 말이 있다. 아래의 「곡례」편 문장 역시 유사한 논의를 보여주는데, 좀 더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예기』「曲禮 下」:
> 제후가 제사에 임함에 內事에서는 “孝子인 아무 나라 제후 아무개”라 말하고, 外事에서는 “曾孫인 아무 나라 제후 아무개”라 말한다.[25]

윗글 “孝子인 아무 나라 제후 아무개”를 예를 들면, “효자인 晉侯 重耳”(晉文公) 또는 “효자인 魯侯 蔣”(魯 哀公) 등과 같은 것이다. “曾孫인 아무 나라 제후 아무개”에서의 ‘증손’은, 진호(1260~1341)의 주석(集說)을 통해 보면, 始封의 군주인 初祖로부터의 ‘거듭된 자손’의 뜻이어서 대수의 한계를 구분하지 않은 표현이다.

‘外事’를 공영달(574~648)은 后稷(社稷)이나 山川에 대한 제례라 설명한다. 후직은 주나라 姬姓 왕조의 始祖인 姬棄를 말하는데, 그는 희성 주나라 후손의 첫 조상이자 농경신으로 상징된다. 천지자연인 산천과 왕조의 조상신인 후직에 대한 원칙적인 제례 주관자는 주나라 왕 天子이다. 따라서 제후들이 자국 내에서 벌이는 외사 제례는 천자의 대리자 자격으로 이행하는 것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호칭을 ‘嗣侯’(* 孝孫보다 더 큰 표현)가 아닌 ‘증손’이라 칭하는 것이다.[26]

---

24) 鄭玄(漢)・孔穎達(唐), 『禮記注疏』 卷26, 「郊特牲」: 祭, 稱孝孫孝子, 以其義稱也;[注——謂事祖禰.] [疏——熊氏云, 祭稱孝孫, 對祖爲言; 稱孝子, 對禰爲言. 以其義稱也者, 義, 宜也, 事祖禰宜行孝道, 是以義而稱孝也.]; 陳澔(元), 『陳氏禮記集說』 卷5, 「郊特牲 第11」: 祭 (…) 義稱也.[祭主於孝士之祭, 稱孝孫孝子, 是以祭之義爲稱也.]

25) 『禮記注疏』 卷5, 「曲禮 下」: 諸侯 (…) 臨祭祀, 內事曰‘孝子某侯某’, 外事曰‘曾孫某侯某’.[疏——某侯某者, 若言齊侯・衛侯, 下某是名. 若伯・子・男, 則云曹伯・許男某也. (…) 外事曰曾孫某侯某者, 外事謂‘社稷山川, 在封內’者也. 天子外事, 言‘嗣王某’, 諸侯不得稱‘嗣侯’, 但稱‘曾孫’. 所以然者, 天子尊謂能繼天德而立也, 諸侯無德不繼嗣爲侯, 故不云‘嗣’, 但是父祖重孫, 故言‘曾孫’也.]; 『陳氏禮記集說』 卷1, 「曲禮 下 第二」: 臨祭祀 (…) 某侯某.[天子德厚流光, 故外事稱‘嗣王某’, 諸侯不敢言繼嗣, 推始封之君而祖之, 故稱曾孫也.]

26) 바로 위 각주의 공영달 疏 참고. ‘嗣侯’는 이 글에서 ‘社稷 山川을 후사한 제후’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고, ‘孝孫’보다 더 큰 표현이다. 『대대례기』 「諸侯遷廟」편에서는 ‘孝嗣侯’라는 표현도 등장한다.(“孝嗣侯某, 敢用嘉幣, 告于皇考某侯”) 이 경우의 孝嗣侯는 ‘선제후를 계승한 제후’를 의미한다.

다음은 「증자문」편 문장이다.

『예기』「曾子問」편 :

증자가 말했다. "宗子가 떠나가 타국에 있음에, 庶子는 爵位 없이 閑居하는 자인데, 제례를 해도 되는지요?" 공자가 말했다. "제례를 해야겠지." "그 제례는 어떻게 할지를 여쭙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무덤을 바라보며 제단을 만들어서 時祭를 지낸다. 만일 종자가 사망하였다면 무덤에 고한 후에 家에서 제례를 올린다. 종자가 죽어서 이름을 칭하고 '孝'라고는 말하지 않으니, 몸이 死沒하고 끝이다.27)

정현(127-200)은 "孝는 宗子의 칭호이다."라 하였다. 윗글 마지막 문장에 대한 정현과 공영달의 해석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즉, 서자가 종자를 대신해서28) 선조에 대한 제례를 올림에, 비록 종자가 죽었다 해도 서자 자신은 스스로를 '효자 아무개'라 칭해서는 안 되고, 그 자신의 자식 대에 가서야 '효자 아무개'라 칭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29) 이 말은 가문의 공식적인 제례 행사에서 효자라는 명칭이 정통의 계승자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의미이다. 종자가 사망한 후 같은 항렬의 형제(庶子, 支子)30)가 제사를 지냄은 종자의 대리자로서 하는 일일뿐더러, 공식적으로 자타 누구든 그를 효자라 칭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는 그 형제의 평소 행위가 효성스러운가의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선조를 계승하지 않은 자는 그 효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문의 공식 행사에서 결코 '효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은, 필자가 '孝' 자에 '계승자'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들 중 하나이다.31)

---

27) 『禮記』, 「曾子問」: 曾子問曰, "宗子去在他國, 庶子無爵而居者, 可以祭乎?" 孔子曰, "祭哉." "請問其祭如之何?" 孔子曰, "望墓而爲壇, 以時祭. 若宗子死, 告於墓而後祭於家. 宗子死, 稱名不言孝, 身沒而已."

28) 여기에서의 庶子란 선친을 계승한 1인의 宗子(嫡長子) 외의 자식들을 말하는 것으로, 모친의 위계와 상관없이 일컫는 말이다.

29) 『禮記注疏』 卷19, 「曾子問」: 若宗子死, (…) 稱名不言孝,[注——孝, 宗子之稱, 不敢與之同, 其辭但言'子某薦其常事'.] [疏——說宗子身沒, 謂告於所祭之墓, 而后祭於庶子無爵者之家也. 宗子旣死, 庶子其祭之時, 告神但稱其名, 不得稱孝, 辟宗子也.] 身沒而已.[注——至子可以稱孝.]

30) 庶子는 계층으로서의 표현이고 支子는 가족관계로서의 표현이지만, 宗統의 계승자와의 상대적 개념으로서는 둘 다 의미가 같다.

31) 명대 胡廣(1370-1418) 등의 『예기대전』에 정리된 「증자문」 보충 설명과, 청대 徐乾學(1631-1694)의 『독례통고』 및 秦蕙田(1702-1764)의 『오례통고』에서도 계승자가 아니면 효라 칭

한편 성호 이익(1681-1763)은, 종자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종자의 일을 승계받은 그의 형제가 선조 제례의 일에서 스스로를 가리켜 효자라고 칭하지 못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할 것이 있는가라는 이의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禮(『예기』)에서 "孝라 칭하지 않는다."라 한 것은, 저쪽이 바로 支子를 가리키고 스스로를 宗(종자)과 구별하였던 것입니다. '孝(효자)'는 본래 '제사를 계승해서 宗(종자)이 됨'의 명칭입니다. '孝孫'이란, '제사를 계승한 후손[承祀之孫]'이라 말하는 것과 같으니, 계승하지 못했다면 그만입니다. 지금은 이미 계승해서 제사를 주관하였을 것이니, '孝(효자)'라 칭하여서 그가 제사를 주관함을 표시함이 크게 거리낄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32]

先祖를 계승한 자라면, 비록 支子라고 해도 종손으로서의 일인 제사 의례를 할 때에 자신을 효자라 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서 역시 계승자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래는 정경세(1563-1633)의 글이다. 비록 제왕이라 해도 자신이 계승하지 않은 부모에게 스스로를 '효자'라 칭할 수 없음을 상소하고 있다.

> 전하(仁祖, 재위 1623-1649)께서는 宣廟(宣祖(재위 1567-1608) 사당)의 손자이시니 昭・穆을 바꾸어서도 안 되시고, 祖・禰(할아버지 사당과 아버지 사당)를 (서로 뒤죽박죽) 어지럽혀도 안 되십니다. 그러므로 '祖'라고만 칭하실 수 있을 뿐이지 함부로 '考'라 칭하시지 못합니다. 선묘에 이미 '祖'라 칭하셨고 自稱은 孫이라 하셨으니, 비록 낳은 분(定遠君)께 '考'라 칭하시고 자칭은 '子'라 하시더라도 심각하게 구애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禮官의 논의는, '(정원군의) 제례를 친히 하시거나 혹은 (私家에) 관원을 파견하실 때에, 考라 칭하되 「皇」자를

하지 못한다 말하고 있다.(『禮記大全』 卷七7, 「曾子問 第7」: 曾子問曰, 宗子去在他國 (…) 故誣於祭也. [(…) 若宗子死, 則庶子告於墓, 而後祭於其家, 亦不敢稱'孝子某', 但稱'子某'而已, 又非有爵者, 稱'介子某'之比也. "身沒而已"者, 庶子身死, 其子則庶子之適子, 祭禰之時, 可稱孝也.]; 『讀禮通考』 卷120, 「廟制 下」; 『五禮通考』 卷150, 「吉禮/大夫士廟祭」: 凡祝版, 於皇高祖考・皇高祖妣, 自稱孝玄孫; 於曾祖考妣, 自稱孝曾孫; 於皇祖考妣, 自稱孝孫; 於皇考妣, 自稱孝子. (…) 自稱, 非宗子, 不稱孝.)

32) 『星湖全集』 卷15, 「書/答 金掌令[光運]」: 禮所云"不稱孝"者, 彼乃指支子而自別於宗者也. '孝', 本是'承祀爲宗'之名. '孝孫'者, 猶言'承祀之孫'也, 不承則已. 今旣承而主祀矣, 稱孝而表其主祀, 未見大妨.

> 더하지 않고, 자칭은 子라 칭하되 「孝」 자를 더하지 않으며, 그 나머지 의절들은 모두 선묘 때의 사례를 따라서 쓰실 것'을 청합니다. 이것은 예관이 스스로 억측해서 만든 예설이 아닙니다.33)

윗글에서는 광해군에 대한 반정으로 왕좌에 앉게 된 仁祖와 그 선친인 定遠君(1580-1619)과의 공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인조는 원칙적으로 폐위된 광해군이 아닌 宣祖를 계승한 임금이지만, 그 둘 관계가 父-子가 아니라 祖-孫 간이기 때문에 제례 시 어떠한 호칭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분한 의견이 있었다. 선조-인조가 예법상 직접 계승자이기 때문에 '부-자'로 보아서, 祝文의 頭辭 명칭과 屬號를 '皇考-孝子'로 칭하는가, 그렇지 않고 실제의 혈육 관계인 '조-손'으로 보아서 '皇祖考-孝孫'으로 칭하는가 라는 말들이 있었다. 정경세는 원래 관계인 조-손으로 보아도 문제 될 일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정원군-인조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를 '考(아버님)'라고만 칭할 뿐 '皇考(위대하신 아버님)'라 하지 않아야 하고, 인조 스스로는 '子'라고만 칭할 뿐 '孝子'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다.

이른바 무도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유도한 인조가 왕위에 섰는데, 인조 자신이 그의 친부에게 스스로를 '孝子'라 부르면 안 된다는 논리는, 바로 유교 예학에 있어서 효자가 곧 계승자의 의미가 되고 종자 종손을 나타내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즉, 인조가 계승한 것은 왕통의 일이지, 왕실 내 범부의 일이 아니라는 당연한 논리이다. 유학 사상의 정수가 담긴 유교의 禮에서, 공식적으로 효자·효손이라 칭할 수 있는 것은 孝心이 있는 모든 후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식의 계승자뿐임을 알 수 있다. 정원군이 원종(元宗 敬德仁憲靖穆章孝大王)으로 추존되고 황제로부터 정식으로 군주 시호(恭良)를 받은 것은 인조 10년(1632)에 와서인데,34) 이때에야 비로소 왕실의 적통 인조는 왕실의 적통이 된 부친에 대해 스스로를 '효자'라 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33) 鄭經世, 『愚伏集』 卷4, 「疏箚/弘文館八條箚」: 蓋殿下, 宣廟之孫, 昭穆不可易, 祖禰不可亂. 故只得稱祖, 而不敢稱考. 旣已稱祖於宣廟, 而自稱爲孫, 則雖稱考於所生而自稱爲子, 未有嫌偪之嘅. 故禮官之議, 請'於親祭或遣官時, 稱考而不加皇字, 自稱稱子而不加孝字, 餘皆遂用宣廟時例.' 此非禮官自爲臆說也.

34) 『광해군일기[정초본]』 147권, 광해 11년 12월 29일 무인 6번째 기사(1619년 명 萬曆 47년).

2) 계승한 자가 아니면 사후 존호에 '효' 자가 없다

『일주서』의 시호 법을 보면 '효' 자를 쓰는 시호의 첫 번째 조건이 "五宗安之."이다.[35] 윗대로 최대 5대조까지의 종통 선조들이 편안히 여긴 사람이란, 종통을 계승한 자이면서 동시에 그 종족 구성원들을 편안하게 이끌었던 사람이다. 통치자의 '효' 시호는 그의 행적이 최소한 그와 같았다고 인정된 것이다. 사실상 이룬 업적도 없이 너무 일찍 죽었거나 폐위당한 경우가 아닌 역대 제왕 중에서 五宗安之하지 못했던 왕은 없을 것이다.

많은 글자들로 구성된, 사후에 받는 왕의 尊號에 '효' 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시호에, 廟號에 조차도, '孝' 자가 쓰이지 않은 이가 있다. 태조 이성계가 그렇다.[36] 다른 후대의 왕들과 그와의 차이점은 선대의 뜻과 일을 계승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이다.

---

35) 孔晁(晉), 『逸周書』 卷6, 「謚法解」 第54: 五宗安之曰孝,[注——五世之宗也.] 恊時肇享曰孝,[恊, 合; 肇, 始也, 常如始.] 秉德不回曰孝,[順於德而不逆.] 大慮行節曰孝.[言成其節.]

36) 효종의 경우 시호 대신 廟號가 孝이다. 아래 표는 조선 왕의 묘호와 시호이다. 지면상 일부만 정리하였는데, 나머지 모두 시호에 孝 자가 있다.

조선 왕의 사후 尊號			
대수	廟號	謚號(尊謚)	典據
제1대	太祖	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8월 7일 임오 3번째 기사(1408년, 명 永樂 6년)
제2대	定宗	懿文莊武溫仁順'孝'	『숙종실록』 12권, 숙종 7년 9월 18일 정묘 1번째 기사(1681년, 청 康熙 20년)
제3대	太宗	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11월 8일 갑인 4번째 기사(1418년, 명 永樂 16년)
제4대	世宗	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2월 22일 정유 2번째 기사(1450년, 명 景泰 1년)
제5대	文宗	欽明仁肅光文聖'孝'大王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5월 21일 계축 1번째 기사(1452년, 명 景泰 3년)
제6대	端宗	純定安莊景順敦'孝'	『단종실록』 1권, 숙종 24년 11월 초8일
제7대	世祖	承天體道烈文英武至德隆功聖神明睿欽肅仁'孝'大王	『세조실록』 47권, 세조 14년 11월 21일 정축 1번째 기사(1468년, 명 成化 4년)
(이하 생략)			

※ 고려 왕조 역시 거의 모든 왕의 시호에 孝 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정란, 「고려 전기 국왕 謚號制의 내용과 그 의미」 『韓國史學報』 82, 고려사학회, 2021, 75면 참조.

이런 상황은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 최초의 유교 제국인 한나라는 전한 후한을 통틀어 대부분의 황제 시호에 孝 자가 붙어 있지만, 제1대 황제인 고조 유방(BC.256-BC.195)과 후한 제1대 세조 유수(BC.5-AD.57)의 시호에는 그것이 없다. 유방의 시호는 高皇帝(고제)이고, 유수는 光武皇帝(광무제)이다.

광무제의 선친 南頓君(?-AD.3)은 촌수가 상당히 멀기는 해도 사실상 한나라 황실의 자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돈군을 포함한 그 4대 선조는 마지막까지 추존되지 않았다. 황제가 된 유수가 그 선조로 삼은 것은 자신의 私親이 아니라 前漢 말의 다섯 황제였다. 宣帝(재위 BC.74-BC.48)부터 平帝(재위 1~5)까지(宣・元・成・哀・平)의 廟[37]를 '황제의 親廟'로 규정한 것이다.[38] 이렇듯 광무제 본인 4대조의 추존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후한이 전한을 이었음을 천명하였기 때문이다. 광무제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부친과 조부들을 계승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호에 孝 자를 쓰지 못한 것이다.

전한의 제2대 혜제는 孝惠皇帝가 정식 시호이고, 문제는 孝文皇帝, 경제는 孝景皇帝, 무제는 孝武皇帝이다. 고황후 여씨(呂雉, ?~BC.180)의 치하에서 허수아비 황제로 있다가 폐위된 제3대 少帝와, 문제의 등극으로 죽음에 이른 제4대 소제[39] 등 그 정식의 황제 시호가 없는 이들[40]을 제외하고, 혜제부터

37) 위의 廟는 사당을 의미한다. 통치자의 통치행위 처소 명칭이었던 廟는, 시황제를 분기점으로 해서 秦漢代 이래 사당의 의미로 변하여 오늘에 이른다. 서정화, 『주나라의 궁, 종묘와 명당』, 한국학술정보, 2017 참고.

38) 서정화, 「瞻星臺 축조 의의 一考察—동양의 禮制 문화 및 古典에서의 관련 기록 분석을 통해」, 『한국문화』 86,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9, 91-92면 참고.; 『後漢書』, 「紀/光武帝紀 下」: 十九年春正月庚子, 追尊孝宣皇帝曰中宗. 始祠昭帝・元帝於太廟, 成帝・哀帝・平帝於長安, 春陵節侯以下四世於章陵.((※ "始祠昭帝・元帝"의 '昭帝'는 그 내용상 '宣帝'의 오기로 보임)); 「列傳/張曹鄭列傳/張純」: 純在朝歷世, 明習故事. 建武初, 舊章多闕, 每有疑議, 輒以訪純, 自郊廟婚冠喪紀禮儀, 多所正定. (…) 乃與太僕朱浮共奏言, "(…) 陛下繼統者, 安得復顧私親, 違禮制乎? 昔高帝以自受命, 不由太上; 宣帝以孫後祖, 不敢私親, 故爲父立廟, 獨群臣侍祠. 臣愚謂宜除今親廟, 以則二帝舊典, 願下有司博採其議." 詔下公卿・大司徒戴涉・大司空竇融議, "'宜以宣・元・成・哀・平五帝四世代今親廟', 宣・元皇帝尊爲祖・父, 可親奉祠, 成帝以下, 有司行事. 別爲南頓君立皇考廟, 其祭上至春陵節侯, 群臣奉祠, 以明尊尊之敬, 親親之恩." 帝從之.

39) '少帝'는 시호가 아니라 단순히 '젊은이 황제'라는 의미로, 전혀 존대하지 않은 명칭이다.

40) 『漢書』, 「紀/高后紀」: 四年夏, 少帝自知非皇后子, 出怨言, 皇太后幽之永巷. 詔曰, "(…) 今皇帝疾久不已, 乃失惑昏亂, 不能繼嗣奉宗廟・守祭祀, 不可屬天下. 其議代之." 群臣皆曰, "皇太后爲天下計, 所以安宗廟社稷甚深, 頓首奉詔." 五月丙辰, 立恆山王弘爲皇帝. (…) 大臣相與陰謀, 以爲少帝及三弟爲王者皆非孝惠子,

평제(孝平皇帝)에 이르기까지 시호에 모두 孝 자가 붙어 있다. 후한의 황제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광무제 이후 명제(孝明皇帝, 재위 57~75)부터 헌제(孝獻皇帝, 재위 189~220)까지 폐위되지 않고 황제 존호가 있는 사람들 모두 시호에 孝 자가 붙어 있다.[41]

선친과 상관없이 스스로 천명을 받아 王者가 된 고제와, 쓰러진 그 한나라를 다시 일으킨 광무제가, 설령 사친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 있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그들은 결코 '효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죽기 전까지 세웠던 업적을 상징적인 문자에 담아 기리는 시호에 孝 자를 넣지 못한 이유이다.

군주의 시호에 孝 자를 붙이는 것은 위진 시대 西晉[42]을 거쳐 唐代로 이어간다. 당나라 황제의 시호는 글자 수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지는데, 754년에 추가 확정된 당 고조 이연(566~635)의 시호는 神堯大聖大光孝皇帝이다.[43] 여기에서 앞의 경우와 다른 모습이 보인다. 나머지 역대 황제는 물론, 제1대 황제 시호에도 孝 자가 부가된 점이다. 제1대 즉, 初祖의 시호에 효 자가 보이는 것은 이뿐만 아니라 송나라, 원나라, 청나라까지 이어진다. 다만 명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명의 주원장과 당·송·원·청 초조들과의 차이는 사실상 분명하다. 기존의 귀족인지 그렇지 않은지, 또는 자식이 훌륭한 통치자가 되는 것이 그 선친이나 선조 자신의 원대한 뜻이자 바람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의 차이이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뜻과 일을 일로 삼아 대업을 이룬 것인지 아닌지의 차이이다.

당 고조 이연의 집안은 그의 출세에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준 귀족 가문이었으며, 더구나 그의 아버지는 隋 文帝 양견(541~604)과 동서지간이기도 했

復共誅之, 尊立文帝.

41) 『한서』의 「본기」(孝惠皇帝, 孝文皇帝, 孝景皇帝, 孝武皇帝, 孝昭皇帝, 孝宣皇帝, 孝元皇帝, 孝成皇帝, 孝哀皇帝, 孝平皇帝), 『후한서』의 「본기」(孝明皇帝, 孝章皇帝, 孝和皇帝, 孝殤皇帝, 孝安皇帝, 孝順皇帝, 孝沖皇帝, 孝質皇帝, 孝桓皇帝, 孝靈皇帝, 孝獻皇帝) 참고.

42) 西晉 : 孝惠皇帝 諱衷(司馬衷), 孝懷皇帝 諱熾, 孝愍皇帝 諱鄴.(『晉書』)

43) 唐 高祖 李淵이 사망하고서(635) 처음 정했던 시호는 '大武'였다. 이어서 上元 원년(674)에는 '神堯皇帝'로, 天寶 8년(749)에는 '神堯大聖皇帝'로 改諡하였고, 마지막으로 천보 13년(754)에는 '神堯大聖大光孝皇帝'라고 增諡하였다.(『新唐書』 卷1, 「本紀 第1/高祖」: 高祖, 神堯大聖大光孝皇帝, 諱淵, 字叔德, 姓李氏, 隴西成紀人也. (…) 貞觀三年, 太上皇徙居大安宮. 九年五月, 崩於垂拱前殿, 年七十一. 謚曰'大武', 廟號高祖. 上元元年, 改謚'神堯皇帝'. 天寶八載, 謚'神堯大聖皇帝'; 十三載, 增謚'神堯大聖大光孝皇帝'.)

다. 이연은 비록 장자가 아니었지만, 그의 할아버지 李虎(?~551)로부터 시작되어 아버지 李昞(?~572)에게 이어진 唐國公의 작위를 물려받았다.[44] 따라서 그에게 최종 시호를 정한 그의 후인들이 판단했을 때, 이연이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것은 공식적으로 그의 아버지와 선조의 뜻을 이은 것이다.

오대십국 시대의 혼란한 중원에서 크고 작은 무공을 세운 아버지 趙弘殷(899~956)과 함께 난세를 헤쳐 온 송나라의 초조 조광윤(927~976) 역시 그 시호에 孝 자를 부가하지 않았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45]

명나라의 초조 주원장(1328~1398)은 시호에 孝 자가 없다.[46] 그가 장자가 아니어서였을 수도 있지만, 앞에서 논한 다른 초조들도 장자가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 朱世珍(1281~1344)은 가난한 농부였고 그 일가친척 역시 주원장이 이룬 대업에 일말의 관련이 없어 보인다. 주원장은 선친의 일이나 뜻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한 고조 유방과 같이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천명을 받아 王者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후대에 시호를 확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정황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5. 결어(유교의 현실적인 상·제례와 효 사상을 돌아보며)

---

44) 『舊唐書』 卷1, 「本紀 第1」, 〈高祖〉: 皇祖諱虎, 後魏 (…), 周受禪, 追封唐國公, (…) 皇考諱昞, (…) 襲唐國公, (…) 高祖以周天和元年生於長安, 七歲襲唐國公.

45) 宋 太祖 趙匡胤의 시호 역시 사망한 때(976)의 '英武聖文神德皇帝'에서, 大中祥符 원년(1008)에 '啟運立極英武睿文神德聖功至明大孝皇帝'로 한차례 변경된다.(『宋史』 卷1, 「本紀 第1」, 〈太祖 1〉: 太祖, 啟運立極英武睿文神德聖功至明大孝皇帝, 諱匡胤, 姓趙氏, 涿郡人也.; 卷3, 「本紀 第3」, 〈太祖 3〉: 九年 (…) 冬十月 (…) 癸丑夕, 帝崩於萬歲殿, 年五十. 殯於殿西階, 謚曰'英武聖文神德皇帝', 廟號太祖. (…) 大中祥符元年, 加上尊謚曰'啟運立極英武睿文神德聖功至明大孝皇帝'.)

46) 明 太祖 朱元璋은 사망한 해(1398)의 시호가 단순하게 '高皇帝'였다가, 永樂 원년(1403)에 '神聖文武欽明啟運俊德成功統天大孝高皇帝'로 하였다가, 다시 嘉靖 17년(1538)에 '開天行道肇紀立極大聖至神仁文義武俊德成功高皇帝'로 增謚하였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영락 원년의 시호에 '孝' 자를 추가했던 것을, 가정 17년의 최종 시호에는 '孝'를 제외시켰다. '統天'을 '開天'으로 변경하였고 '行道肇紀立極'을 추가해 넣었으며, '大孝'를 '大聖'으로 변경한 것이다.(『明史』 卷1, 「本紀 第1」, 〈太祖 1〉: 太祖, 開天行道肇紀立極大聖至神仁文義武俊德成功高皇帝, 諱元璋, 字國瑞, 姓朱氏, 先世家沛, 徙句容, 再徙泗州. 父世珍, 始徙濠州之鍾離, 生四子, 太祖其季也.; 『明史』 卷3, 「本紀 第3」, 〈太祖 3〉: 三十一年 (…) 五月 (…) 閏月 (…) 乙酉, 崩於西宮, 年七十有一. (…) 辛卯葬孝陵, 謚曰'高皇帝', 廟號太祖. 永樂元年, 謚'神聖文武欽明啟運俊德成功統天大孝高皇帝, 嘉靖十七年, 增謚'開天行道肇紀立極大聖至神仁文義武俊德成功高皇帝'.)

본 논의에서 필자는 孝의 사상적 의의에 대하여 禮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접근하였다. 유학 사상을 담은 그릇인 禮 속에서 그 사상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논어를 주석한 황간과 주희는 아버지의 선악은 논하지 않고 자식의 효심만을 논할 뿐이라는 견해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논조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사실상 효의 정의가 '부모가 뜻을 품고 일삼아 왔던 일의 계승자'이기 때문이며, 그가 계승한 것이 권력이나 신분이라면 부모의 선악과 상관없이 그 수혜에 대한 막중한 도덕적 책무가 뒤따름을 말한 것이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묵인되어오던 斷指割股와 같은 극단적 행동이 결코 효일 수 없음을 실제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이처럼 부모의 뜻[志]과 일[事]을 잘 계승하는 사상인 효는, '부모가 뜻과 일을 가졌을 때'와 '그 뜻과 일을 자식이 계승하고자 한 경우'에서만 논할 수 있다. 철저하고 경직된 신분제 사회에서는 뜻과 일을 지닐 수 있으려면 그럴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했다. 인재 등용이 과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면서 개개인의 뜻과 일은 천민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게 된다.

『논어』 속에서, 부모로부터 지극한 보살핌과 깊은 사랑을 받고 자란 자식으로서의 仁함을 보여주는 척도인 3년의 상심[三年喪]과, 그가 효의 길[孝道]을 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공자에게는 별개의 문제이었음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그 안에서 보이는 바로 그 삼년상은 禮의 범주 밖의 것이었음도 살펴보았다.

조선 시대의 경우, 부모 상사에서의 삼년상 이행 여부로 공직자의 효심과 기본적인 자질이 평가되었다. 관리의 효심에 대한 증명이 공개적으로 필요하던 시대에 삼년상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의례로 편입되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상심[喪]은 마음속 문제이고, 상심의 의례[喪禮]는 그 아픔의 정도를 겉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喪의 의례화는 관리 등용에 있어서 孝廉이라는 것이 제정되고 확대되던 시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을 듯한데, 이는 차후의 숙제로 남겼다.

정현은 "孝는 宗子의 칭호이다."라 말하였는데, 예경과 예설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는 유학을 통치 철학으로 삼은 정부나 국교로 삼은 왕조들에서 실제로 적용되어온 것인데, 비록 제왕이라 해도 자신이 계승하지 않은 부모에게 스스로를 '효자'라 칭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은 사망한 후에 올려지는 존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시대 역대 왕 중에서 시호 또는 묘호에 '孝' 자가 없는 왕은 태조 이성계뿐이다. 이는 그가 선친의 뜻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천명을 받아 왕이 된 사람이라는, 후인들이 내린 대외적인 공식 선언인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최초의 유교 제국인 한나라는 전한 후한을 통틀어 대부분의 황제 시호에 '효' 자가 붙어 있지만, 제1대 황제 유방과, 후한 제1대 유수의 시호에는 그것이 없다. 유방 역시 그의 선조들과 상관없이 스스로 천명을 받아 황제에 오른 사람으로 인정된 결과였다. 후한 광무제는 비록 그의 선조들이 유방의 후손이었어도, 후한은 전한을 이었음을 천명하였기 때문에 그의 공식적인 선친과 선조는 사친들이 아니라 전한 말 다섯 황제로 확정되었다. 그의 마음속 효심이 깊었다 해도 공식적으로 결코 효자가 될 수 없었다.

당 고조 이연의 시호에는 '효' 자가 부가되어 있는데, 초조의 시호에 '효' 자를 쓴 것은 명나라를 제외하고 송나라, 원나라, 청나라까지 이어진다. 명의 주원장과 당·송·원·청 초조들과의 차이는, 아버지의 뜻과 일을 일로 삼아 대업을 이룬 것인지 아닌지, 시호를 정한 후인들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상 본 논의에서 논한 것들을 개략하였다.

한편, 신정근은 효에 대해 '遺傳의 매개'로 판단하였고, 그 근거를 부모 세대가 이룩한 물질적 정신적 자산을 상속받는데 두고 있다.[47] 필자는 효 사상의 핵심이 그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만 효를 '생명 再生의 기반'이나, '제사를 통해서 망자와 그 후손 간의 주기적 만남을 아우르는 덕목'이라는 입장은[48]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제사에 대한 그와 같은 관념은 후대에 형성된 풍속화·대중화된 요소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일반 대중이 따

47) 신정근, 『효, 순간을 넘어 영원을 사는 길』, 문사철, 2016, 68-69면 참조.
48) 신정근, 위의 책, 67·70면 참조.

라 하는 미풍양속으로서의 제사가 아닌, 사상과 철학을 지닌 조선의 유학자가 행하는 제례에서는, 선조의 생명 재생이나 귀신과의 상봉을 기뻐하기보다는, 그 선조가 생전에 품으셨던 훌륭하신 뜻과 크든 작든 이루신 업적을 떠올리며 벅차오르는 심정을 느끼면서 자신이 잘 계승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고 있을 듯하다.

효도와 선조 제사, 효도와 삼년상은 분명 상호 유기적 관계에 있는 것들이기는 하다. 그러나 효도와 선조 제사는 '유교 사상'과 '유교 의례'의 관계이고, 효도와 삼년상은 '유교 사상'과 '인륜적 정서'의 관계이다. 따라서 선조 제사가 곧 효도이고 삼년상이 곧 효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비약이라 할 수 있다. 즉, 효는 본체이고, 제사는 그가 진정한 후계자 다운 사람임을 나타내는 외형적・대외적 표현의 수단일 뿐이다. 또, 3년의 상은 자식이 끈끈한 親의 관계 속에 있었던 그 부모를 잃은 충격과 상심을 조금씩 진정시켜 가는 과정의 시간들이다. 여기에서, 돌아가신 부모가 훌륭하신 뜻과 일을 지니고 있었거나, 자식이 그것을 계승해서 이어가겠다고 마음먹었거나는, 이상적인 것일 수는 있어도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는 제사를 지내는 가정도 줄었고 제사 대수도 축소된 경향이다. 사실상 조선말 이래 일상화된 '만인의 4대 봉사'는 예학적으로 보았을 때 사치스럽고 僭越한 의례 행위였다. 그것이 현대인들의 합리적이면서도 상식적인 판단에 의한 흐름이었든, 유학계에서의 캠페인으로부터였든(*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제례가 현실에 맞게 변화된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비록 『朱子家禮』에서 4대의 奉祀를 명시하고 있지만, 고대 예경과 예설[古禮]을 토대로 보면 그것은 諸侯의 의례이다. 즉, 제후는 4대조와 그 시봉 제후인 초조까지 최대 다섯 분에 대한 제사를 올릴 수 있고, 대부는 2대조와 초조까지 세 분의 제례를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는 최대 조부모까지만, 그리고 관직이 없는 서인 계층의 경우는 부모만이 제사의 대상이다.[49]

---

49) 『禮記』, 「禮器」: 禮, 有以多爲貴者. 天子七廟, 諸侯五, 大夫三, 士一.; 「王制」: 天子七廟, 三昭三穆, 與太祖之廟而七; 諸侯五廟, 二昭二穆, 與太祖之廟而五; 大夫三廟, 一昭一穆, 與太祖之廟而三; 士一廟; 庶人祭於寢.; 『穀梁傳』, 「僖公 15年(BC.645)」: 天子七廟, 諸侯五, 大夫三, 士二. 故德厚者流光, 德薄者流卑. 是

송대에 귀족사회가 해체되고 사 계층(사대부)이 국가의 중심 세력을 형성하면서 자신들에게 맞는 실용적인 禮書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보급·확산된 것이 바로 관·혼·상·제례의 예서 『주자가례』였다. 성리학자들은 한대의 예학적 이념과 송대의 俗禮的인 부분을 적절히 조화시킴과 아울러, 사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종법 질서를 구체화하고, 行禮의 적용에 있어서 사의 신분 초월적 관념을 심어 넣고자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四代奉祀이다.[50] 사 계급의 사대봉사 주장이 마치 의례 면에서의 혁신적인 평등성으로 비추어질지 모르나, 그 처음에는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하층민이나 노비에게까지 염두에 두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17세기 조선에서 예학의 시대를 지나 18세기가 되면 서인을 위한 가례 제정의 목소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51] 그것은 성리학적 義理 예학과 맞물려 전개된 『주자가례』의 확산에 따른 의례의 대중화 분위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그 사대봉사는 天道를 추구하며 인간의 도리[人道]를 실천하는 성리학의 이상에 기반한, 선조들의 뜻과 일을 누대로 잘 계승해온 가문임을 보여주는 도덕적 우월성의 표상이었다. 그것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사대봉사는 업적의 과포장이자 도덕의 사치라 말하고 싶다.

지금의 생활에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부합되어 보이는 고대 예경에서의 제사 대수는, 망자의 생존 시 삶과 자손들과의 실제적인 관계에 의한 것이었

以貴始, 德之本也, 始封必爲祖.; 『孔子家語』, 「廟制」: 天子立七廟, 三昭三穆, 與太祖之廟而七, 太祖近廟, 皆月祭之, 遠廟爲祧, 有二祧焉, 享嘗乃止. 諸侯立五廟, 二昭二穆, 與太祖之廟而五, 祖考廟, 享嘗乃止. 大夫立三廟, 一昭一穆, 與太祖之廟而三, 享嘗乃止. 士立一廟, 曰考廟, 王考無廟, 合而享嘗乃止. 庶人無廟, 四時祭於寢.; 『蔡中郎集』 外集卷4, 「獨斷」: 天子三昭三穆, 與太祖之廟七, 七廟一壇一墠, 曰考廟·皇考廟·顯考廟·祖考廟, 皆月祭之. 諸侯二昭二穆, 與太祖之廟五, (…) 大夫一昭一穆, 與太祖之廟三, (…) 上士二廟一壇, (…), 下士一廟, (…) 庶人皆無廟, 四時祭于寢也.

고대의 禮經과 禮說에서 위와 같이 규정해 놓고는 있었지만, 이는 다만 이상적인 廟制와 그에 따른 祭禮로서 인정된 것일 뿐, 선진시대의 현실에서는 꼭 이 규정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孔子 당시 魯나라 대부들이 1백 2백년 전 특정 조상 한 사람의 제례를 중심으로 결집하기도 했다.) 즉 요체는, 漢代 이래로 위의 기록이 정통의 周나라 예법이라 여겨져 왔다는 점이다.

50) 서정화, 「儒教的 傳統婚禮의 理念과 展開過程—朝鮮 中·後期의 家禮書를 中心으로」, 동방문화대학원대 박사학위논문, 2015, 20면 참고.

51) 권오영, 「조선조 士大夫 祭禮의 원류와 실상」, 『민족문화논총』 46,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0, 471-472면 참고.

다. 천자부터 대부까지 특수층에서의 그것은 史書에 기록되고 후인들이 기억할 수 있을 만한, 나라와 가문에 대한 망자의 실제적인 업적을 고려한 제사 대수였다. 王政이 사라지고 국민이 주인인 현재의 대한민국에 士 庶人 아닌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필자는 '자녀가 부모를 가깝고 극진하게 봉양하며 사랑하는 것'을 父子有親에서의 '親의 하나'라 정의하였는데, 하나라고 말한 이유는, 부자유친은 말 그대로 父와 子의 양측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부모에 대한 지극한 봉양은, 사랑의 마음에 의해 행할 수 있고, 의무에 의해서도 행할 수 있으며, 둘 다에 의해서도 행할 수 있다. 사랑에 의한 것은 순전히 부자유친을 해왔던 결과이다. 부모의 뜻[志]과 일[事]을 잘 계승하는 사상인 효는, '부모가 뜻과 일을 가졌을 때'와 '그 뜻과 일을 자식이 조금이라도 계승하고자 한 경우'에서만 논할 수 있다.

그 뜻과 일은, 지금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물질적 재화의 풍요를 정당하게 추구하는 일일 수도 있고, 직업 관련 일이나 특정의 전문 기술일 수도 있으며,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중요한 가치였던 사회에서의 역할과 고귀한 인품을 만들어 가는 도덕적 수양일 수도 있다. 또는 각자 개인이 추구하는 소박하고 순수한 그 무엇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자녀가 닮고 계승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임에는 틀림없다.[52]

52) 과거의 우리 선조 유학자들은 자식이 닮게 할 훌륭함을 자기 스스로가 지녀야 함을 굳이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았다. 자녀들에게 효를 요구하고 주장하는 그 순간에도 말할 필요조차 없는, 상식의 앎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첫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훌륭한 어른으로서 자신을 수양하고 있었다. 父와 母가 함께한 태교에서의 몸가짐·마음가짐이 그것이다. 현재의 우리는 계승거리를 만들어주어야 하는 부모 역할의 존재는 어느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식의 효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
조선의 유학자들이 가장 중요시한 업적은 정신적·도덕적 업적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학문을 닦았던 1차 목적이었다. 관료가 되기 전부터 훌륭한 인격을 고양시키지 않으면, 관료가 되었을 때 국가와 조정에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설령 당연직 관료로서 활동하지 않았더라도 향촌 사회에서 자신들의 이상세계를 이 땅에 구현하고자 끊임없는 수양과 공부를 지속하며 道와 德을 닦아 나갔고, 그와 함께 몽매한 민중들을 교화하고 계몽시켜 나갔다. 이것은 조선 성리학의 가장 긍정적인 업적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 이른바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는 것 중 상당수는 바로 이런 사람들로부터 파동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참고문헌

『禮記』, 『禮記注疏』(鄭玄/後漢・孔穎達/唐), 『陳氏禮記集說』(陳澔/元)
『禮記大全』(胡廣 等/明), 『大戴禮記』, 『逸周書』(孔晁(注本)/晉), 『爾雅』
『說文解字』(許愼/後漢), 『說文解字注』(段玉裁/淸), 『釋名』(劉熙/後漢)
『御定康熙字典』, 『漢書』, 『後漢書』, 『晉書』, 『舊唐書』, 『新唐書』, 『宋史』
『明史』, 『論語』, 『論語集解義疏』(何晏/魏・皇侃/梁), 『論語注疏』(何晏/魏・邢昺/北宋)
『論語集註』(朱熹/南宋), 『孟子』, 『蔡中郎集』(蔡邕/後漢), 『孔子家語』(王肅/魏)
『讀禮通考』(徐乾學/淸), 『五禮通考』(秦蕙田/淸)

『朝鮮王朝實錄』, 『愚伏集』(鄭經世), 『星湖全集』(李瀷)
『與猶堂全書』(丁若鏞), 『眉巖集』(柳希春), 『龍湖閒錄』

서정화, 『주나라의 궁, 종묘와 명당』, 한국학술정보, 2017.
신정근, 『효, 순간을 넘어 영원을 사는 길』, 문사철, 2016.
권오영, 「조선조 士大夫 祭禮의 원류와 실상」, 『민족문화논총』 46,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0, 449-478면.
서정화, 「『논어』에서 말하는 공자 효 사상의 본질적 의미—'공자에게 있어서 삼년상과 제사는 효일까?'를 절문(切問)하는 과정에서—」, 『유교사상문화연구』 85, 한국유교학회, 2021, 69-99면.
_____, 「儒敎的 傳統婚禮의 理念과 展開過程 - 朝鮮 中・後期의 家禮書를 中心으로」, 동방문화대학원대 박사학위논문, 2015.
_____, 「瞻星臺 축조 의의 一考察—동양의 禮制 문화 및 古典에서의 관련 기록 분석을 통해」, 『한국문화』 86,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9, 77-108면.
안호용, 「조선시대의 삼년상과 기복제도」, 『한국사회』 15-2,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2014, 103-157면.
이정란, 「고려 전기 국왕 諡號制의 내용과 그 의미」 『韓國史學報』 82, 고려사학회, 2021, 63-95면.

【Abstract】

A Study on Hyo (孝) Ideology through Study of Confucian Rites

Seo, Jeong-Hwa*

In study of Confucian Rites, the words of Jongja (宗子: the eldest son of the head family) and Jongson (宗孫: the eldest grandson of the head family) meaning a successor are the same as filial son and filial grandson, and even a king cannot become an official filial son regardless of whether he has filial love or not if he hasn't succeeded his parents. Depending on whether one becomes crowned as a king beginning a new regime, such as Yi Seong Gye (李成桂), following the will of one's parents or ancestors or just on one's own, 'Hyo (孝: filial piety, filial son)', is included into or excluded from the posthumous name granted after one's death.

Filial piety and ancestral rites are in the relationship of Confucian ideology and Confucian rites, and filial piety and three years of mourning (三年喪) are in the relation of Confucian ideology and the emotions of humanity. In other words, Hyo is the matter of essence, and ancestral rites are just the means of external expression that he is a true inheritor. In addition, the three years of mourning is the time as the process for a son or a daughter to gradually relieve the shock and pain of heart from losing their parent with whom they were in a close relationship of qīn (親: associating with, cherishing and loving).

A son's or a daughter's feeling close to one's parents, supporting them sincerely and loving them are natural emotions from the love and care from their parents, and are in the area of reciprocal ethics. Hyo, which means a successor inheriting the will of one's parents for great cause and what they used to do, is in the area of ideology accepted by the choice following each individual's beliefs.

Keywords: Hyo (孝), filial duty, three years of mourning, good parent-child relationship, Confucian Rites, posthumous name.

* Senior Researcher,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DongBang Culture Univ.

접수일: 2021.09.18. ‖ 심사일: 2021.10.08. ‖ 게재확정일: 2021.11.19.